

2024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복지분과 정책제안서

경상남도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운영

경남에 정착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 또는 취업 준비생들은 체감실업률, 물가 상승, 취업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 이에 부담을 느끼고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밖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청년들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경남 지역 청년들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정신적인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마음 건강 바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체감실업률, 물가 상승, 취업 문제 등의 문제가 결합하여 청년층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에 비해서 청년들에게 과도하게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나타남. 이러한 요인 때문에 청년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
- (목적)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신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도내에서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경남에서는 도 차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마음 건강 치료를 위해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상담을 위해 청년마음단디(경남청년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평가를 통해서 정신과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정 소득 이하는 치료비를 지원함.
 - 다만 위와 같이 경남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

※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

- 1) 체감실업률 상승 : 2021년 상반기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4%로, 6년 전에 비해 3.5%p 높아짐. 실직자를 포함한 청년들의 실업률은 30대의 2.2배, 40대의 2.6배에 달함(2021)
- 2) 물가 상승 : 청년 물가상승률은 2018년 이후 0%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상반기에 1.8%로 급등함
- 3) 청년 자살률 :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으로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 수준(65.1%)으로 나타남.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1874명으로 30대 사망자 수의 절반 가까이(48.4%) 차지
- 4) 이에 대응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진주시의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음.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겪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제도의 시행이 필요함을 판단

□ 정책 개요

- (추진기간) '25년 3월 ~ '27년 3월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가.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2. 지원내용 : 3개월 내 10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가. 사전·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나.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3. 서비스 가격(회당 가격, 3개월에 10회, 재판정시 최대 12개월 지원)

※ 아래 가격 및 지원금은 경상남도 진주시, 부산광역시 정책 사례를 공통으로 참고한 것이며, 이후 제공인력 및 기관에 따라 책정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서비스가격	지자체 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거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또는 경남청년정보플랫폼으로 신청)

5.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6. 모집 인원: 100~200명 (A, B형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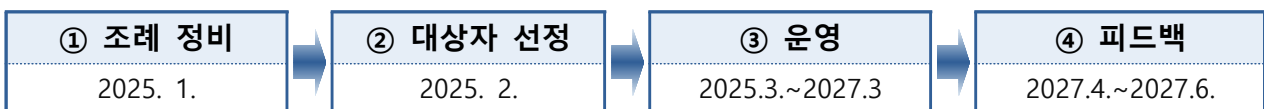
7. 평가 및 개선

가. 바우처 이용 후 만족도 조사를 하여 개선점을 반영

나.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반영 및 피드백

○ (추진일정)

- 조례 제정 이후 사업자 선정 및 홍보소통공간 설치 이후 운영



□ 사업 예산

○ 경상남도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필요 예산

- 예상 최대 모집 인원: 200명

- 1인당 지원 액수: 63,000원 (B형 기준으로 우선 책정)

- $200 \times 63,000\text{원} = 12,600,000\text{원}$ (전체 예산)

※ 남은 예산이 있을 시 모두 도에 반환

□ 근거

○ (조례) 청년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내외 유사정책, 기대효과 등

- 부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부산광역시)

- 진주청년 마음건강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타 정책과 제안내용의 차별성 : 진주 내에서 시행된 기존 정책을 경남 전체로 확대하여 경남 전체 청년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 마음단디와 같은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더불어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만약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남 청년들의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음. 그럼으로써 사회 안에서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 자살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함.